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신 종 갑 의원)

의 안 번 호	23-26
------------	-------

발의년월일: 2023. 3. .

발의자: 신종갑,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오욱자, 장정희, 차해영, 채우진,
한선미

1. 제정이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나.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안 제5조)
- 다. 구민참여단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관계법령

- 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6조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 나. 양성평등 기본법 제35조(양성평등한 가족)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23. 3. 17. ~ 3. 22.

나. 의견제출: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등 가정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
3. “가사 스트레스”란 가사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대상은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사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
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3. 가사 서비스 지원
4.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
5.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 추진 시 구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구민제안 공모대회, 사례 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정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실태 파악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은 관련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80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 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가족상담·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 기본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35조(양성평등한 가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령·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9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가족행복지원과 황은경
연 락 처	02-3153-8529